

기업협업센터(ICC)운영규정

10-1-27

규정번호 10-1-27
제정일자 2022.6.8
최근개정 2025.8.11
개정차수 6차 개정
관리부서 산학협력단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 지산학연 협력을 위해 특화산업별 기업협업센터(ICC : Industry Cooperation Center, 이하 “ICC”라 한다)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5.3.31.)

제2조(조직) ① ICC에는 센터장을 두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5.3., 2024.7.24., 2025.8.11)

②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4.10.21., 2025.8.11)

③ ICC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원, 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(개정 2024.7.24.)

④ ICC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, 산학협력협의체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4.7.24.)

제3조(업무) ICC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.(개정 2024.7.24.)

1. ICC 운영계획 수립
2. ICC 운영 지원 및 관리
3. ICC 연계 지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(공동)운영 및 관리(개정 2025.3.31.)
4. 지산학연협력협의체 운영 및 지원(개정 2024.7.24., 2025.3.31)
5. ICC 성과관리 및 환류
6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업무

제4조(ICC 운영위원회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추진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운영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센터장, 우리대학 교원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위촉하며, 위촉직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 팀장 또는 직원을 간사로 둔다.

⑤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10-1-27 기업협업센터(ICC)운영규정

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
⑦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내부(보직자) 위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
[본조개정 2025.3.31.]

제5조 <삭제(2024.7.24.)>

제6조(ICC 산학협력협의체) ① ICC의 산학협력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(개정 2024.7.24.)

1.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 사업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
3. 융합과정 개설을 위한 산업체 수요 발굴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
4. ICC와 연계한 기업지원프로그램 수요 발굴 및 수행(개정 2024.7.24.)
5.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(개정 2025.8.11.)

② 협의체는 센터장, 우리대학 교직원, 산업체 및 지방자치단체,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등 9명 내외로 구성한다.(개정 2022.12.12., 2025.8.11)

③ (개정 2022.12.12., 삭제 2025.8.11)

④ <삭제(2025.8.11.)>

⑤ <삭제(2025.8.11.)>

제6조의2(재원 및 회계) ① ICC연계 산학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이 없는 경우 산학협력단에 편입하여 관리한다.

② 센터의 재원 집행은 재원 기관의 지침에 의하여 집행하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련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.

③ 예산과 결산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에 따라 관리한다.

[본조신설 2025.8.11.]

제7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우리 대학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제3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항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10-1-27 기업협업센터(ICC)운영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항·제3항·제4항, 제3조, 제3조제4호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6조제4호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2항, 제4조제4항·제5항·제6항·제7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, 제3조제3호·제4호, 제4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1항·제2항, 제6조(조문), 제6조제2항·제3항·제4항·제5항, 제6조의2)